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한 규정(제11조의2)을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2026년 8월 19일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함.

II. 검토의견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